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6. 최형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형두의원)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

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공사업자가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영세 사업자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사업자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건설공사 관련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 대상 교육제도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안 제14조의3 제2항은 신규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